

광주지방법원 2023. 8. 16 선고 2023가단5116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

변 론 종 결 2023. 7. 12.

판 결 선 고 2023. 8. 16.

주 문

1. 전라남도 화순군 B 전 531㎡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20. 2. 1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20. 2. 21. 접수 제3173호로
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C은 2019. 12. 26. 전남 화순군 D, E 토지 등을 F에게 매도하였다. 나. 원고는 위 매매에 관하여 C에게 아래 표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C은 이를 체납하고 있다.

세 목	귀 속	납세의무 성 립 일	신고일자	납부기한	고지세액	체납세액
양도소득세	2020년	2020.1.31.	2020.3.31.	2020.5.31.	342,902,380원	433,376,280원
양도소득세	2020년	2020.1.31.	2020.3.31.	2020.7.31.	356,254,950원	446,086,910원

다. C은 2020. 2. 11.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전라남도 화순군 B 전 53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20. 2. 21. 접수 제317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. 2. 11.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,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

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

피고는,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, C이 2019. 12. 26. 전남 화순군 D, E 토지 등을 매도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, 피고는 C의 처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소결론

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재석